

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3월 22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3월 10일, 정재동, 고영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3월 22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정재동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코로나19 장기화, 극심한 경기침체로 등으로 매출 감소 및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조례 적용 대상 범위 규정 신설(제2조의2 신설)
 -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 신설(제5조의3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- 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적용범위 대상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써
- 소상공인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